

광명시 사업소 및 동 지도담당 규정

제정	2007. 4. 4	훈령	제262호
개정	2008. 10. 1	훈령	제276호
	2008. 12. 11	훈령	제277호
	2009. 5. 28	훈령	제284호
	2010. 12. 15	훈령	제297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2. 10. 22	훈령	제320호
일부개정	2013. 8. 1	훈령	제329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4. 9. 26	훈령	제340호
일부개정	2015. 5. 28	훈령	제351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6. 12. 29	훈령	제382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7. 12. 15	훈령	제392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8. 2. 2	훈령	제394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8. 11. 19	훈령	제401호
일부개정	2019. 12. 20	훈령	제411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20. 12. 22	훈령	제417호
일부개정	2021. 6. 10	훈령	제420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21. 10. 7	훈령	제425호
일부개정	2022. 8. 2	훈령	제430호
일부개정	2023. 10. 10	훈령	제438호
일부개정	2024. 7. 8	훈령	제44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명시 산하 사업소 및 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9>

제2조(정의) ① 사업소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차량등록사업소를 말한다. <개정 2008. 12. 11, 2010. 12. 15, 2018. 11. 19, 2020. 12. 22>

② 동이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 11. 19>

제1장 사업소

제3조(담당) 사업소에 대한 본청의 지도·조정 관련부서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업무의 처리) ① 사업소장은 업무를 처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모든 업무는 시장의 결재 전에 반드시 업무 관련 국장의 결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 12. 15, 2018. 11. 19>

1. 수당의 지급 등 법령,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의 처리
2. 사업소장의 전결로써 처리 가능한 사항

3. 확정된 계획 및 시책의 추진

4. 그 밖에 경미한 사항

② 업무관련 부서의 국장은 결재 과정 및 업무 협의의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도·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5, 2018. 11. 19>

제2장 하부 행정기관 <개정 2018. 11. 19>

제5조(담당) ① 담당 부서의 지도 담당 동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 11. 19>

② 동을 담당하는 부서는 담당 동에 대하여 공통적인 지도 사항과 시장으로부터 특별하게 지시받은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8. 11. 19>

제6조(지도) ① 동을 담당하는 부서장은 선거 등 당면 사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담당 동에 출장하여 당면 사업에 대해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9>

② 당면 사업에 대해 지도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착안하여 지도·확인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자료를 즉시 담당 국장 및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5, 2018. 11. 19, 2020. 12. 22>

1. 동정·시정 등 시책 추진 상황
2. 근무기강 상태
3. 지역동향 관리 상태
4. 조직, 단체, 주민들의 시정 참여 호응 상태
5. 그 밖에 지역행정 수행 상태

제7조(동장의 협조) 동장은 동 행정 전반에 걸쳐 담당 부서장과 항상 긴밀하게 연락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9>

제8조(특수사항 통보) 담당 부서장은 담당 동의 특별하거나 특수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총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5, 2018. 11. 19, 2020. 12. 22>

제9조(지도방안 연구) 동 행정지도를 위한 효율적인 지도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부서장을 소집하여 동 행정에 대해 종합적인 연구

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본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광명시 동 지도담당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8. 10. 1 훈령 제27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11 훈령 제277호>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발령한다.

부칙 <2009. 5. 28 훈령 제28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15 훈령 제297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광명시 사업소 및 동 지도담당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광명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 중 지식정보사업소 및 상하수도사업소를 제외한 사업소”를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국장 또는 부서장”을 “국장”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국장 또는 과장”을 “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 부분과 제8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구 분	담 당 국 장	담 당 부 서
사업소 별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재 정 경 제 국 장	
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	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과

광명시 사업소 및 동 지도담당 규정

시 민 회 관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체육과
실 내 체 육 관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체육과
환 경 사 업 소	도시환경국장	환경청소과

구 분	담 당 국 장	비 고
사업소별		
차량등록사업소	재정경제국장	

한다.

별표 2 중

구 분 동 별	담 당 국 장	담 당 부 서
광 명 1 동	재정경제국장	회계과
광 명 2 동	"	세무과
광 명 3 동	건설교통국장	지도민원과
광 명 4 동	"	교통행정과
광 명 5 동	"	재난안전관리과
광 명 6 동	"	도로과
광 명 7 동	행정지원국장	기획예산과
철 산 1 동	"	감사담당관
철 산 2 동	"	행정지원과
철 산 3 동	"	공보담당관, 지적과
철 산 4 동	"	민원정보통신과
하 안 1 동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
하 안 2 동	"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하 안 3 동	"	사회복지과
하 안 4 동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환경청소과
소 하 1 동	"	주택과, 도시개발과
소 하 2 동	"	공영개발과, 공원녹지과
학 온 동	재정경제국장	기업경제과

구 분 동 별	담 당 국 장	담 당 부 서
광 명 1 동	재정경제국장	회계과, 생활경제과
광 명 2 동	"	세정과, 청소행정과
광 명 3 동	"	기업지원과
광 명 4 동	건설교통국장	지도민원과
광 명 5 동	"	도시교통과
광 명 6 동	"	재난하수과
광 명 7 동	"	도로과
철 산 1 동	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과, 교육지원과
철 산 2 동	"	미래전략실, 감사실
철 산 3 동	"	자치행정과
철 산 4 동	"	홍보실, 정보통신과
하 안 1 동	"	민원지적과
하 안 2 동	복지문화국장	복지정책과
하 안 3 동	"	가족여성과, 문화관광과
하 안 4 동	"	사회복지과, 체육진흥과
소 하 1 동	도시환경국장	주택과, 녹색환경과
소 하 2 동	"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학 온 동	"	도시정책과

로

한다.

⑥ 부터 ⑳ 까지 생략

부칙 <2012. 10. 22 훈령 제32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8. 1 훈령 제329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광명시 사업소 및 동 지도담당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광명6동란의 “재난관리과”를 삭제하고, 철산1동란의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2014. 9. 26 훈령 제34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사업소 및 동 지도담당 규정

부칙 <2015. 5. 28 훈령 제351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광명시 사업소 및 동 지도담당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2 담당부서란 중 “도시정책과”를 “융복합도시정책과”로, “도로과”를 “광역도로과”로, “도시교통과”를 “첨단도시교통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2016. 12. 29 훈령 제382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광명시 사업소 및 동 지도담당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소하2동 및 학운동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동 별 / 구 분	담 당 국 장	담 당 부 서
소 하 2 동	시민행복국장	문화체육과, 글로벌관광과
학 운 동	”	공원녹지과

② 생략

부칙 <2017. 12. 15 훈령 제392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규정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광명시 사업소 및 동 지도담당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담당부서의 광명2동란과 하안1동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동 별 / 구 분	담 당 국 장	담 당 부 서
광명2동	고용경제국장	세정과, 세원관리과
하안1동	자치행정국장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④ 및 ⑤ 생략

부칙 <2018. 2. 2 훈령 제394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규정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광명시 사업소 및 동 지도담당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광명7동란과 철산1동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광명7동	시민행복국	도로과, 도시교통과
철산1동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스마트도시과, 도시재생과

④ 생략

부칙 <2018. 11. 19 훈령 제40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0 훈령 제411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광명시 사업소 및 동 지도담당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광명5동, 광명7동, 철산1동, 철산2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국장 등 동 지도담당(제5조 관련)

동 별	구 분	담 당 국 장	담 당 부 서
광 명 5 동		기획조정실장	예산법무과, 홍보담당관
광 명 7 동		도시재생국장	도시계획과, 주택과
철 산 1 동		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철 산 2 동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과, 감사담당관
하 안 4 동		사회복지국장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소 하 1 동		사회복지국장	복지정책과, 위생과
소 하 2 동		경제문화국장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③ 부터 ⑪ 까지 생략

광명시 사업소 및 동 지도담당 규정

부칙 <2020. 12. 22 훈령 제41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 6. 10 훈령 제420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광명시 사업소 및 동 지도담당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지역경제과’를 ‘기업지원과’로, ‘창업지원과’를 ‘사회적경제과’로 ‘도시계획과’를 ‘신도시계획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2021. 10. 7 훈령 제42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 8. 2 훈령 제43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 10. 10 훈령 제43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 7. 8 훈령 제44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24. 7. 8>

국장 등 사업소 지도담당(제3조 관련)

사업소별	구 분	담 당 국 장	비고
	차량등록사업소	자치행정국장	

[별표 2] <개정 2024. 7. 8>

국장 등 동 지도담당(제5조 관련)

동 별 / 구 분	담 당 국 장	담 당 부 서
광 명 1 동	안전건설교통국장	철도정책과
광 명 2 동	자치행정국장	세정과
광 명 3 동	경제문화국장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경제과
광 명 4 동	기획조정실장	탄소중립과, 정보통신과
광 명 5 동	기획조정실장	예산법무과, 홍보기획관
광 명 6 동	신도시개발국장	신도시조성과, 도시개발과, 균형개발과
광 명 7 동	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철 산 1 동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교통과
철 산 2 동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과, 감사담당관
철 산 3 동	자치행정국장	총무과, 회계과
철 산 4 동	신도시개발국장	스마트도시과, 도시재생과
하 안 1 동	자치행정국장	자치분권과, 민원토지과
하 안 2 동	안전건설교통국장	가로정비과
하 안 3 동	사회복지국장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하 안 4 동	사회복지국장	장애인복지과
소 하 1 동	사회복지국장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소 하 2 동	경제문화국장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일 직 동	경제문화국장	기업지원과, 도시농업과
학 온 동	도시주택국장	정원도시과, 건설지원과